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8. 9. 11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8. 9. 11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98. 9. 16) 상정

○ 제6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98. 9. 17)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장상진)

가. 제안이유

○ 부천시장이 주요정책을 탐색·도입·평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보좌하기 위하여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정책개발위원회 설치운영

• 기능(안 제2조)

- 부천시의 새로운 정책의 필요에 관한 연구·조사·자문

- 시의 주요정책 도입 여부 자문

- 시의 진행중인 정책을 평가하여 정책의 존·폐에 대한 자문

• 구성(안 제3조) : 위원장 포함 10인 이내 기획·정책분야 전문가

• 회의(안 제5조) : 정기회 월 1회, 임시회 수시

• 실비변상(안 제9조) : 일비, 여비 및 기타보상

○ 정책개발연구단 설치운영

• 설치(안 제10조) : 정책개발위원회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 민간위원 및 공무원(안 제3조)

- 정책개발연구단에 3인 이내의 민간전문위원을 둘 수 있으며, 3인 이내의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파견할 수 있으며, 사무 보조를 위하여 기능직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음.

-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음.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개발단 위원을 선거 당시의 선거 참모를 채용하는 것 아닙니까? ○ 시의 정책개발을 위해서 3명의 전문위원을 4, 5급의 직원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되는데요? ○ 정책개발위원회의 기능을 시장에게 자문하는 기능에 한정하도록 정책개발자문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개발을 위해서 유능한 사람을 채용하겠습니다. ○ 6급 상당의 전문위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 좋습니다.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 음

나. 반대토론

○ 없 음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요지

○ 제2조 위원회의 기능중 제3항을 삭제하자는 소수의견 있었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동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한 시장의견을 청취한 바 있음.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

의안번호	관련 제15호
의결년월일	98. 9. 22 (제64회)

제출년월일 : 1998. 9. 18

제 출 자 : 기획재정위원장

1. 수정이유

○ 정책개발위원회가 시장의 정책결정에 관여할 여지가 있어 위원회의 역할을 시장의 정책자문에 대해서만 의견을 제시하는 데 제한을 두기 위해 정책개발위원회의 당초 명칭을 정책개발자문위원회로 수정함.

2. 주요골자

○ 조례안의 제목 및 내용 중 정책개발위원회의 명칭을 정책개발자문위원회로 함.

부천시정책개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수정안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조례 제명중 “정책개발위원회”를 “정책개발자문위원회”로 한다.

제1조 및 제2장의 제목중 “정책개발위원회”를 “정책개발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 본문중 “정책개발위원회”를 “정책개발자문위원회”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p>부천시<u>정책개발위원회</u>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 주요정책을 탐색·도입·평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보좌하기 위하여 <u>정책개발위원회</u>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정책개발위원회</u></p> <p>제2조(기능) 부천시<u>정책개발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3 (생략)</p>	<p>……<u>정책개발자문위원회</u>……</p> <p>제1조(목적) ……</p> <p>……<u>정책개발자문위원회</u>……</p> <p>……</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u>정책개발자문위원회</u></p> <p>제2조(기능)……<u>정책개발자문위원회</u>……</p> <p>……</p> <p>1~3 (현행과 같음)</p>

[수정안 포함]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 주요정책을 탐색·도입·평가할 수 있도록 자문 및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자문위원회와 정책개발연구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정책개발자문위원회

제2조(기능) 부천시정책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새로운 정책의 필요에 관한 연구·조사·자문
2. 시의 주요정책을 새로 도입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
3. 시의 시행중인 정책을 평가하여 존치 또는 폐지할 것인지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위원은 연구·기획 및 정책개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의) ①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부서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제출 요청
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기타 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인, 참고인, 전문가 등의 의견 개진 요청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4. 기타 위촉원인이 소멸한 때

제8조(간사)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단에서 파견된 공무원 중에서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변상) ①위원회에서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일비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②위원이 특정한 시정과업에 대하여 연구·조사·평가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3장 정책개발연구단

제10조(설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을 실무지원하기 위하여 정책개발연구단을 둔다.

제11조(민간위원 및 공무원) ①정책개발연구단에는 3인 이내의 민간전문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개발된 정책의 실현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의와 혁신을 지향하는 3인 이내의 공무원을 전문위원으로,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을 사무보조원으로 파견하여 공동 활동하게 할 수 있다.

③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액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간위원의 채용) 민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채용하며 검정방법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으로 한다.

제13조(민간위원의 자격) 민간위원은 4년제 대학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로서 정책 또는 기획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제14조(채용관련 구비서류) 민간위원의 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경력증명서 1부
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4. 신원진술서 3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제15조(복무) 민간위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해임) 민간위원의 해임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6월 30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